

(5)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(소득령 §26의3)

현 행	개 정 안
☐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○ 「상법」 §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<신 설> - 다만,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	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○ (좌 동) - 대주주등*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→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*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(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) -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